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1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
발 의 자: 강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곽향기, 김규남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 
김지향, 김형재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 
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 
박춘선, 서상열, 서호연,  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 
윤기섭, 이병운, 이상욱,  
이숙자, 이원형, 이종환,  
장태용, 최기찬, 최민규,  
황철규 의원(34명)

## 1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완화,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,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그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보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함(안 제7조제3항)
- 나.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함(안 제7조제4항)
- 다. 사망위로금을 신설함(안 제7조제5항 신설)
- 라.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조치를 신설함(안 제7조의2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국가보훈 관계”를 “국가보훈관계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만 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”을 “보훈예우수당, 제5항의 사망위로금 및 제7항”으로 한다.

-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및 위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<u>국가보훈 관계</u>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)가 <u>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</u>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관계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서울</u> <u>특별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유족 및 가족 제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 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⑤·⑥ (생략)

⑦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,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의 위문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<신설>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15만  
원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⑧ -----  
--- 보훈예우수당, 제5항의 사망위로금 및 제7항-----  
-----.

제7조의2(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및 위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	제3항	○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발생
	제4항	○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발생
	제5항	○ 사망위로금 신설로 인한 비용 발생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# 가. 대상

- 생활보조수당 연령폐지에 따른 추가 지급비용(안 제7조제3항)
-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지급비용(안 제7조제4항)
-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 신설로 인한 지급비용(안 제7조제5항)

##### 나. 전제

##### ① 생활보조수당 지급 관련

- (대 상 자) 연령기준 폐지 시 620명<sup>1)</sup> 확대를 전제(매년 동일을 전제)
- (수당금액) 안 제7조제3항에 따라 월 200천원을 전제(매달 지급)

##### ②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

- (대 상 자) 지급대상 확대 시 3,300명<sup>2)</sup>에게 지급을 전제(매년 동일을 전제)
- (수당금액) 월 50천원 증액<sup>3)</sup>된 금액만 추계함을 전제(매달 지급)

##### ③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

- (대 상 자) 지급대상 확대 시 820명<sup>4)</sup>에게 지급을 전제(매년 동일을 전제)
- (수당금액) 안 제7조제5항에 따라 200천원을 전제

- (발생기간)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  
  - 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#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##### 라. 방법

- 서울시 복지실 제공자료 활용 등

1) 11,664명(서울시 65세 미만 보훈대상자) × 5.3%(서울시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)  
 2) 현행 같은 조례 제7조제4항의 지급대상과 동일  
 3) 월 10만원 → 월 15만원(동 개정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지급액 인상)  
 4) 112,281명('24.5. 기준 서울시 보훈대상자) × 0.73% (2023년 대한민국 조사망률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18,160,000천원(연평균 3,632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 (안 제7조제3항)	1,488,000	1,488,000	1,488,000	1,488,000	1,488,000	7,440,000
	○ 보훈예우수당 지급비용 (안 제7조제4항)	1,980,000	1,980,000	1,980,000	1,980,000	1,980,000	9,900,000
	○ 사망위로금 지급비용 (안 제7조제5항)	164,000	164,000	164,000	164,000	164,000	820,000
	소계(a)						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3,632,000	3,632,000	3,632,000	3,632,000	3,632,000	18,160,000

주 : 서울시 복지실 제공자료 활용

### 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### 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    희    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생활보조수당 연령폐지에 따른 추가 지급비용(안 제7조제3항)
-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지급비용(안 제7조제4항)
-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 신설로 인한 지급비용(안 제7조제5항)

### 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18,160,000천원(연평균 3,632,000천원)

$$- 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①생활보조수당연평균지급비용} + \text{②보훈예우수당연평균지급비용} + \text{③사망위로금연평균지급비용})_i$$

$i = \text{비용추계 연차}(2025\text{년} \sim 2029\text{년})$

나. 연평균 비용 = 3,632,000천원(① + ② + ③)

$$\begin{aligned} \text{① 생활보조수당 연평균 추가재정소요액} &= 1,488,000\text{천원} \\ &= \text{지급대상} \times \text{생활보조수당} \times 12\text{개월} \\ &= 620\text{명} \times 200\text{천원} \times 12\text{개월}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 \text{② 보훈예우수당 연평균 추가재정소요액} &= 1,980,000\text{천원} \\ &= \text{지급대상} \times \text{보훈예우수당 증가액} \times 12\text{개월} \\ &= 3,300\text{명} \times 50\text{천원} \times 12\text{개월}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 \text{③ 사망위로금 연평균 추가재정소요액} &= 164,000\text{천원} \\ &= \text{지급대상} \times \text{생활보조수당} \times 12\text{개월} \\ &= 820\text{명} \times 200\text{천원} \times 12\text{개월} \end{aligned}$$